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5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 11. 16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인·명을 명으로 용어통일, 구청장·구의 약칭 사용(안 제2조)
- 나.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관할 조정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의 회의 등 관련법 조항과 불일치한 사항 개정, 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신설(안 제6조제2항, 같은 조 제5항 신설)
- 라.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시 전년도 재산등록,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·제9조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7. 9. 20 ~ 10. 10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, “구청장”을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, “부산광역시 사하구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산광역시 사하구”를 “구”로, “의회”를 “구의회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”를 “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8조제11항”을 “법 제8조제1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및”을 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”을 “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산광역시 사하구”를 “구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1”을 “어느 하나”로, “재적위원 3분의 2 이상”을 “출석위원 3분의 2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8조제6항”을 “법 제8조제7항”으로, “법 제8조제11항”을 “법 제8조제1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)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<u>1인</u>을 포함한 <u>5인</u>으로 구성되며, 위원은 다른 각 호의 규정에 의거 <u>구청장</u>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<u>3인</u>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2. <u>2인</u>의 위원은 <u>부산광역시 사하구</u> 의회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<u>3인</u>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<u>2인</u>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<u>부산광역시 사하구</u> 의회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의회의 추천</u>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1명</u> ----- <u>5명</u> ----- ----- -- <u>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</u>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이라 한다) ----- 1. <u>3명</u> ----- ----- ----- 2. <u>2명</u> --- <u>부산광역시 사하구</u>(이하 “<u>구</u>”라 한다)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1. ----- <u>3명</u> --- ----- 2 ----- <u>2명</u> - ----- ③ ----- 구 ----- ----- <u>구의회</u> ----- ----- 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</p> <p>1.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p>
	<p>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 1. <u>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와</u>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 되는 자에 대한 고발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1. 법 제8조 제7항 ----- ----- 법 제8조 제12항 --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.</p>
<u><신설></u>	<p><u>제7조의2(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)</u></p> <p>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